

## 감리지적사례 FSS/1912-9 : 미수금 및 재고자산에 대한 충당금 미 계상 등

- 쟁점분야 : 충당금 인식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결정연도 : 2019년
- 회계결산일 : 2017.3.31.

### 1. 회사의 회계처리

T사는 매출처의 자금사정 악화로 대금 회수가 지연되고, 연기된 결제기한 이후에도 대금이 회수되지 않자 매출과 매출원가를 취소하면서 매출원가를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는데, 동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지 않았다. 또한 T사는 범용성이 없어 매출처에만 판매할 수 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충당금도 계상하지 않았다.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① T사는 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가 되지 않는 등 미수금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낮았음에도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하였으며, ② 범용성이 없어 매출처에만 판매할 수 있는 재고자산의 판매가능성이 낮아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손실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하였다.

###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58에 따르면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9에 따르면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 ③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과 매출처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할 때, T사의 미수금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하고,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였으므로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4. 시사점

회사의 경영진은 매출채권이나 미수금 등 금융상품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매출처에만 판매 가능한 재고자산의 경우 판매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질 경우 평가충당금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